



제437 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천회생법원 설치〉

■ 김교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022호)

2026. .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인천회생법원 설치	3
참고자료 1. 비용추계 결과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교홍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9. 16.

3. 회 부 일 : 2025. 9.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는 3개의 회생법원(서울, 부산, 수원)이 운영 중이고, 2026년 3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음.

다만, 2023년 법원별 도산사건 접수 건수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가장 많고, 수원회생법원, 대구지방법원 그 다음은 인천지방법원의 순으로,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인천광역시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음. 또한 2024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는 평균 2.5개월이 소요되어 서울회생법원의 처리 속도보다 두배 이상 지연되고 있음. 더불어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확정(2028.3.1.)됨에 따라, 인천고등법원에도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인천 지역 소재 기업 및 주민에게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

하고자 함(안 별표 1 및 별표 10).

Ⅲ. 검토의견

1. 인천회생법원 설치

- 개정안은 [별표 1]을 개정하여 인천회생법원을 새로이 설치하고, [별표 10]을 개정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인천회생법원의 관할구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및 개정내용>

개정대상	개정내용
[별표 1] 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인천회생법원 설치
[별표 10]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 인천회생법원 관할구역 규정

<신설 회생법원의 소재지, 관할구역 및 시행일>

법원명	소재지	관할구역	시행일
인천회생법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천시·김포시	2028년 3월 1일

- 회생법원은 도산사건(회생·파산사건¹⁾)을 처리하는 전문법원으로,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국제도산 사건과 그 관련사건을 관장하고 있음. 우리나라 최초의 회생법원은 서울 회생법원으로 2017년 3월 1일 설치되었으며, 2023년 3월 1일에는

1) ‘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며, ‘파산’은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참조]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2026년 3월 1일에는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이 각각 추가로 설치되었음.

- 회생법원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에서 규정하고 있음. 서울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 수원회생법원은 수원시·오산시·용인시·양평군 등 경기도 소재 18개 시·군, 부산회생법원은 부산광역시, 대전회생법원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회생법원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음.

회생법원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회생법원 신설 당시 개정법률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²⁾³⁾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 회생법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 2) 법률 제1447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지방법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은 이 법에 따른 회생법원으로, 관할 지방법원장은 이 법에 따른 회생법원장으로 본다. <2017. 3. 1. 시행, 2016. 12. 27. 일부개정>
 - 3) 법률 제14470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회생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항에 따라 제기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 <2017. 3. 1. 시행, 2016. 12. 27. 일부개정>

<회생법원(지방법원 포함) 및 그 관할구역 현황>

연번	권역	회생법원·지방법원	관할구역
1	서울고등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2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고양시·파주시·남양주시·구 리시·가평군
3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부천시·김포시
4		춘천지방법원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5	수원고등	수원회생법원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성남시·하남시· 평택시·이천시·안산시·광명시·시흥시·안성시· 광주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여주시· 양평군
6	대전고등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7		청주지방법원	충청북도
8	대구고등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9	부산고등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10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양산시
11		창원지방법원	양산시를 제외한 경상남도
12	광주고등	광주회생법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13		전주지방법원	전라북도
14		제주지방법원	제주시·서귀포시

- 개정안은 인천광역시에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려는 것으로, 예상 사건 수 규모, 도산사법서비스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법원 조직·인력·시설 등 사법자원의 활용 및 배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먼저, 2020년 이후 법원별 도산사건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인천지방법원 도산사건 접수 건수의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가 2023년에는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2025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되는 도산사건 접수 건수는 21,528건으로, 2026. 3. 1. 개원한 대전회생법원(17,939건), 대구회생법원(20,687건), 광주회생법원(10,913건) 보다 많으며,

도산사건을 관할하는 전체 회생(지방)법원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45,378건), 수원회생법원(41,362건), 부산회생법원(23,828건) 다음으로 접수 건수가 많음.

<2020년~2025년 법원별 도산사건 접수 건수>

(단위: 건)

고등	회생(지방)법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서울회생법원	38,467	37,568	36,516	42,834	43,216	45,378
	의정부지방법원	13,662	12,630	11,374	13,933	14,045	15,983
	인천지방법원	20,598	18,122	16,603	19,668	20,156	21,528
	춘천지방법원	3,474	3,545	3,195	3,722	4,155	4,604
	강릉지원	1,176	1,056	1,110	1,287	1,278	1,625
	소계	77,377	72,921	68,798	16,288.80		
수원	수원회생법원	27,690	25,711	24,183	30,592	34,959	41,362
대전	대전지방법원 (2026. 3. 1. 대전회생법원)	14,217	13,953	13,306	14,978	15,737	17,939
	청주지방법원	4,975	4,943	4,974	5,521	5,746	6,512
	소계						

대구	대구지방법원 (2026. 3. 1. 대구회생법원)	16,983	16,533	16,875	20,196	19,521	20,687
부산	부산회생법원	11,077	10,952	11,050	17,135	20,935	23,828
	울산지방법원	5,960	5,753	5,691	5,635	5,053	4,899
	창원지방법원	13,829	12,436	11,995	10,603	7,261	6,673
	소계						
광주	광주지방법원 (2026. 3. 1. 광주회생법원)	8,819	9,179	8,545	9,706	9,699	10,913
	전주지방법원	5,480	5,407	5,428	5,920	5,928	6,689
	제주지방법원	2,620	2,380	2,419	2,863	3,043	3,402
	소계						
합 계		266,404	253,089	242,062	220,881	210,732	232,022

주 1) 도산사건 = 회생합의 + 회생단독 + 법인파산 + 개인파산 + 면책 + 개인회생

2) 강릉지원은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 사건 합계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 인천고등법원은 2028. 3. 1. 개원 예정으로 도산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유일한 고등법원 권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산사건의 특성상 채무자의 조기 회복을 위하여 신속한 절차
진행이 중요하고 도산사건의 전문적 처리를 위하여 전문 법관 외에
관리위원, 회생위원 및 법원사무관 등 도산 관련 인력 등의 전문적
조직 구성이 필요하며, 도산실무를 집중적으로 연구·개선하는
기능과 함께 홍보 기능 또한 다른 지방법원과는 달리 중요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인천지방법원의 도산사건 수,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따른 위상 변화 및 도산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인천회생법원을 설치할 경우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 내 도산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 사법 서비스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법원행정처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접수되고 있는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2026. 3. 1. 개원한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의 기존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보다 많고, 2026. 3. 1. 인천고등법원 개원 예정으로 도산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유일한 고등법원 권역이 되는 바, 인천회생법원 설치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균질한 도산 사법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천회생법원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1

- 개정안에 따라 인천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17억 5,000만원, 2030년 21억 2,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80억 7,600만원(연평균 96억 1,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인천회생법원 설치 (안 [별표] 1)	21,750	20,226	1,895	2,076	2,129	48,076	9,615

주: 본 추계는 서울회생법원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천회생법원의 규모를 추정한 후, 법관 증원 없이 법원공무원만 증원하는 것을 전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인천회생법원 신축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부대경비, 21명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 법관은 증원하지 않고 법원공무원만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현 인천지방법원 도산사건 처리인력 52명은 그대로 승계하되 행정지원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21명의 행정지원 인력이 증원되는 것으로 추정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 부칙에 따라 2028년 3월부터 인천회생법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약 2년 동안 청사 신축을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는 서울회생법원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천회생법원의 규모를 추정한 후, 법관 증원 없이 법원공무원만 증원하는 것을 전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